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05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건설개발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97,607,770원, 농어촌특별세 319,563,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가. 원고는 1994. 10. 25. 상·하수도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5년~2008년경 [redacted]시 [redacted]동 16-3 일대 [redacted]2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합계 19,549.66㎡(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각 매수하고, 2006. 7. 12.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02. 11. 20.경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 30.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92,348,265,869원(=취득원가 87,128,648,678원 + 이자비용 5,152,044,205원 + 수수료 등 67,572,986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197,607,770원, 농어촌특별세 319,563,770원을 부과·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상세한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정당세액(원)					지방세액(원)				부인과세액(원)		
	과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합계	92,348,265,869	3,199,765,000	2,157,230	431,440	319,976,490	2,157,230	2,157,230	431,440	412,720	3,197,607,770	319,563,770	3,517,171,540
신고가액	92,348,265,869	1,846,965,310	2,157,230	431,440	184,696,530	2,157,230	2,157,230	431,440	412,720	1,844,808,080	184,283,810	2,029,091,890
신고물성실 가산세		368,961,610			36,896,160					368,961,610	36,896,160	405,857,770
납부물성실 가산세		983,838,080			98,383,800					983,838,080	98,383,800	1,082,221,8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edacted]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인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에 터 잡은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잔금지급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난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삼게 되면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1)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취소되어야 하는 토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액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2) 원고는 2011. 7. 14. [redacted]2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제2011-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가 내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그 무렵부터 전·답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2011. 7. 14.을 기산일로 삼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제시한 금액 92,348,265,869원 중 취득가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1,912,267,678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자비용으로 임의산정된 5,152,044,205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수수료 등 명목의 비용 67,572,986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는 과세관청이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까지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에게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행정관계의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또한 원고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행해진 경우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해당 토지의 '취득시점'에 관한 판단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5년~2008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7. 12.부터 2009. 1. 12.까지 위 토지들 중 상당부분에 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009. 1. 30.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위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위 해제일인 2009. 1. 30.부터 30일이 되는 2009. 3. 1.(공휴일) 다음날인 2009. 3. 2. 만료된다고 할 것이고, 그 만료일 다음날인 2009. 3. 3.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산일인 2009. 3. 3.부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이때 '납부지연일'은 본세에 관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부기한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09. 1. 30.부터 30일이 되는 2009. 3. 2. 만료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납부지연일은 그 다음날인 2009. 3. 3.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9. 3. 3. 내지 그 이후를 기산일로 삼아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내려진 이후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2011. 7. 14.경을 납부지연일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고시가 내려지기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졌고, 2009. 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무렵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고시가 있기 전에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의 납부지연일이 2011. 7. 14. 무렵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6, 7,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92,348,265,869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제16기(201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 중 '용지' 항목에 101,765,602,958원이 계상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1,912,267,678원이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만 주장할 뿐 그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등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신고세액의 과세표준액으로 1,979,840,856원(≒용지계정차액 1,912,267,678원 + 지급수수료 67,572,986원)을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그 직원 A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내역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이자비용으로 5,152,044,205원을 사용하였다. 각 차입금마다 여러 가지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건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평균이자율인 8%를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받아들여 위 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비용에 가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등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 5,152,044,205원을 각 토지에 안분하여 신고하였다.

③ 또한, 위 취득가액 계산내역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2009. 1. 3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무사수수료, 뉴타운 중개수수료, 관리수수료, 용역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67,572,986원을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받아들여 위 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비용에 가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김영석

판사 민경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1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끝.